

TRADE FOCUS

2016년 18호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2016년 5월

통상연구실 박지은 수석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

CONTENTS

[요 약]	i
I. 원산지 누적조항의 필요성	01
II. 누적조항(cumulation)의 이해	03
III. FTA별 누적조항의 채택	09
IV. 결론 및 시사점	15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박 지 은 수석연구원
제 현 정 연구위원

(☎ 02-6000-5342, jieunpark@kita.net)
(☎ 02-6000-5175, hjje76@kita.net)

FTA 원산지 누적조항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FTA 체결국간 기존 역내 생산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TPP, RCEP 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자간 FTA 활용으로 기업의 글로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적조항은 각국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누적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의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재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를 획득(originating status)한 재료만을 역내산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는 역외산으로 간주한다.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 누적 뿐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FTA를 체결한 역내 전체가 하나의 영역(free trade zone)으로 간주되어 역내에서 사용한 재료, 수행한 공정 및 작업을 고려해 원산지를 판정하게 된다. 완전누적은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그 재료의 생산에 수행된 역내 공정과 부가가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자사 생산품 뿐 아니라 공급받은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FTA 참여국은 자국의 산업 및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원산지 누적의 범위를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원산지 재료의 누적만을 인정하는 양자누적이 기체결 FTA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주로 GSP(특혜무역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 사용되었던 완전누적 방식도 최근 들어 메가 FTA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간 FTA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일 FTA 내에서(intra-FTA)의 누적뿐 아니라 다른 FTA간(inter-FTA)의 누적을 인정하는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 다양한 형태가 고려되고 있다.

한국의 14건의 기체결 FTA는 상대국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모두 허용한다.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의 경우 원산지 재료 뿐 아니라 공정(production) 누적까지 인정되는 반면 EFTA, 아세안, EU, 중국과의 FTA 등은 원산지를 획득한 재료만 누적이 인정된다. 독특하게 한-캐나다 FTA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다.

누적조항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역내 누적을 허용함으로써 FTA 참여국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원산지 사후검증 측면을 고려시 생산에 사용한 모든 재료의 원가 정보 및 공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의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누적조항 활용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가 다양한 누적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업계는 구체적인 활용 모델 및 사후검증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문

I. 원산지 누적조항의 필요성

- FTA 특혜 원산지규정은 법적으로는 FTA의 특혜 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결정방식을 규정한 근거조항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우회 무역 제한을 목적으로 함
 - 특혜 원산지규정이 미비하거나 너무 낮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FTA 체결국의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 비체결국의 우회 무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
 - FTA 원산지규정의 최적 수준은 무역 창출 효과는 증대시키는 한편, 원산지 증명 등에 따른 비용 및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것임
 - 상품의 관세가 높은 산업일수록 FTA 상대국을 통한 제3국의 우회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선호
 - 유럽 국가(Pan European model)의 경우 농수산물, 미국(NAFTA 등)의 경우 섬유 및 의류, 자동차에 대해 매우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1차 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FTA 체결국 역내에서 ‘완전생산(wholly obtained)’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완전생산품은 원산지 결정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또는 ‘충분한 공정(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을 사용

품목별 원산지기준 주요 원칙

- ▶ **완전생산(wholly obtained)** : 천연자원, 농수산물 등과 같은 상품은 FTA 체결국의 영토 내에서 생산될 경우 원산지 지위 획득
- ▶ **실질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 역외국의 재료와 공정이 포함된 불완전생산품에 대해 역내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요건을 동시 충족
 - **부가가치기준(value-added criterion)** :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HS 2, 4, 또는 6단위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요건
 -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 실질적 변형을 수반하는 특정한 공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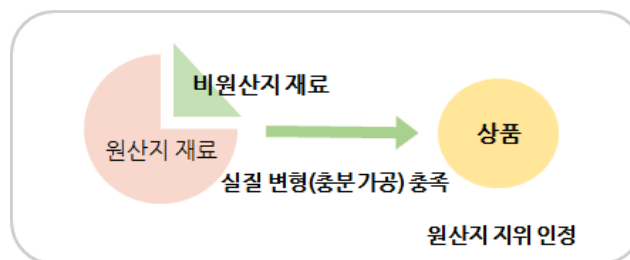
■ 한편, FTA 체결국간 기존 역내 생산 및 중간재 공급망을 효율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원산지 누적조항이 활용됨

- 글로벌 생산 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일 국가 내에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충족시킬 실질적인 변형 또는 충분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원산지 누적조항을 통해 각각의 생산 단계에서 투입되는 재료의 부가가치 또는 제품의 공정과정을 누적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체결국 역내 재료 사용 및 가공을 촉진시킴
- 한편, 분업 생산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FTA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누적조항이 등장
 - EU는 EU를 중심으로 원산지기준이 동일하게 체결된 FTA간(inter-FTA) 누적(유사누적)을 허용
 - 최근 체결된 EU-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섬유 원부자재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를 감안하여 EU 및 베트남이 각각 FTA 체결되어 있는 특정 국가(한국)로부터의 특정 품목(직물)에 한하여 누적(교차누적)을 허용
 - 향후 국가간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품목에 한하여 FTA내 또는 FTA간 누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Ⅱ. 누적조항(cumulation)의 이해

-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와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를 가공해 제조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실질 변형(충분 가공) 기준이 충족돼야 원산지 지위가 인정됨
- 실질 변형 또는 충분 가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각 협정은 품목(HS 코드)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을 선택하거나 보완적으로 이를 조합하여 사용함

〈불완전생산품(Not wholly obtained)의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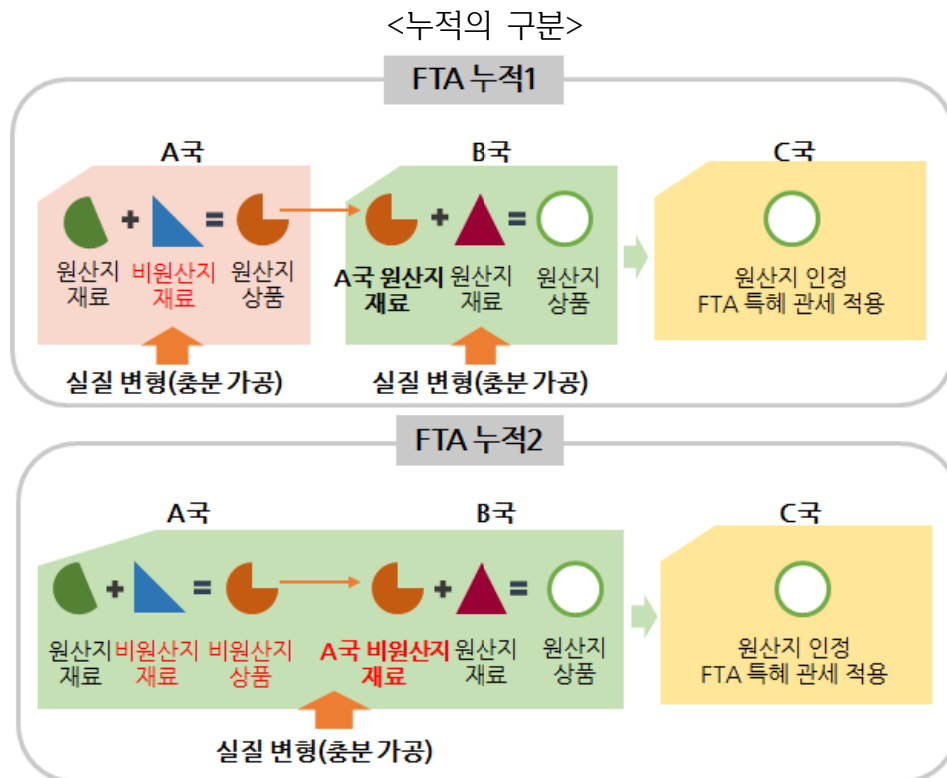


- 누적(cumulation 또는 accumulation)은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 FTA 역내 국가들 간의 생산 및 공정을 최종 생산국이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을 의미
- 누적은 누적이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됨

(사례) A, B, C국이 FTA를 체결하고 있을 때 B국에서 C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시

- (FTA 누적1) FT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originating good or material)를 누적하는 것을 뜻하며 역내의 단일 국가 내에서 실질 변형(충분 가공)이 일어나 원산지를 획득한 재료만 누적 인정
-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는 당사국 내에서 완전히 획득(wholly obtained)되었거나, 실질적 변형 또는 충분한 가공을 거쳐 협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함

- B국 상품의 원산지 판정시 A국에서 수입한 재료가 이미 A국의 원산지를 획득했으므로 해당 재료의 누적 인정
- (FTA 누적2) 최종 생산품 원산지 결정시 FTA를 체결한 역내 전체에서 수행한 모든 공정 및 작업을 원산지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하는 것을 뜻함
- B국 상품의 원산지 판정시 A국에서 수입한 재료가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역내에서 조달한 원산지 재료 및 수행한 공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정함



- 상기 누적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의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누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이를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¹⁾이라고 함

1) 완전누적(full cumulat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원산지 재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누적(partial cumulation)으로 표현하기도 함

- 양자누적은 최종재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를 획득(originating status)한 재료만을 역내산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는 역외산으로 간주함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의 사례〉

【 사례 】 양자누적 (한-EU FTA 사례)

한국의 생산자 A는 EU에 스틱형 아이쥬도우(eye stick, HS 3304.20)를 수출한다. 이 때 생산자 A는 재료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 일부는 EU에서 수입했다.

* HS 3304.20의 원산지기준 : 4단위 세번변경 or MC(import Contents method, 비원산지 재료비 비율) 40% 이하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누적 여부에 상관없이 생산자 A는 원산지를 획득한다.

한편,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누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원산지 재료비 비율(MC)은 53.8%로 40.0%를 초과하게 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누적을 적용할 경우 EU산 원재료 1,500원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비역내산 원재료는 2,000원이 되어 비원산지 재료비 비율(MC)은 30.8%로 낮춰지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 스틱형 아이쥬도우(HS 3304.20) : 6,500원 (EXW)

소요부품명세서(Bill of Materials)

재료 품목	HS코드	단가	원산지
칸테리라납(Candelilla wax)	1521.10	700	한국
DC 245	2931.90	500	한국
DC 749	3824.90	800	한국
EB-21	2924.19	900	EU
GP-1	2914.19	600	EU
KC-9805A	3206.19	1,500	미상
LANOL99	2924.19	500	미상
합계		5,500	
- 역내산	한국	2,000	
	EU	1,500	
- 역외산		2,000	

● 원산지 판정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HS 3304호와 동일한 HS 4단위를 사용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 누적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원산지 획득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 누적 미적용시 원산지 불충족

$$MC = \frac{1,500 + 2,000}{6,500} = 53.8\% > 40.0\%$$

- 누적 적용시 원산지 충족

$$MC = \frac{2,000}{6,500} = 30.8\% < 40.0\%$$

2. 완전누적(full cumulation)

-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material) 누적 뿐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역내 공정 및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완전누적(full cumulation)²⁾이라 표현함

- FTA를 체결한 역내 전체가 하나의 영역(free trade zone)으로 간주되어 역내에서 사용한 재료, 수행한 공정 및 작업을 고려해 원산지를 판정

2)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누적이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임

- 한 당사국에서 생산된 재료가 비원산지로 판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재료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수행된 공정 및 부가가치는 최종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서 역내산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
- 협정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에 따라 누적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사례〉

【 사례 ① 】 세번변경기준에서의 누적 (NAFTA 사례)³⁾

캐나다 생산자 A는 비원산지 원면(cotton, HS 5203)을 수입해 면사(HS 5205)를 생산했다. 이 때 면사(HS 5205)는 비원산지 원면을 사용하였으며, 2단위 세번변경이 충족되지 않아 면사는 비원산지로 판정 받는다.

* HS 5205 원산지기준 : 2단위 세번변경

미국 생산자 B는 캐나다 생산자 A에게 면사(HS 5205)를 수입하여 면직물(HS 5208)을 생산했다. 이 때 면직물은 비원산지 면사를 사용하였으며, 원산지기준 역시 충족되지 않아 면직물은 비원산지로 판정 받는다.

* 4단위 세번변경이 되었으나 HS 5205에서의 변경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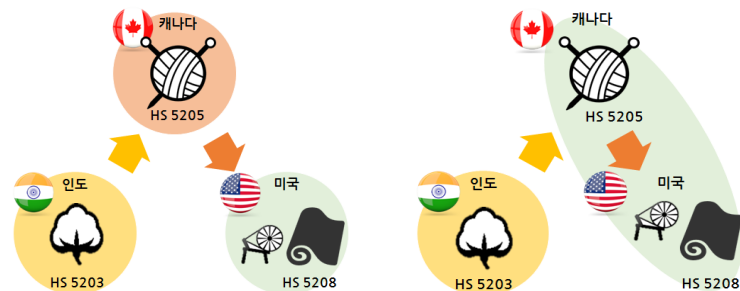
(누적적용) 한편 완전누적이 적용될 경우 생산자 A의 공정을 B가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면직물(HS 5208)은 원면(HS 5203)을 사용하여 생산한 것이 되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면직물은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 받는다.

• HS 5208 원산지기준
이 상품군 외의 호에서 제5208호 내지 제5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제5401호 내지 제5404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 미국 생산자 B의 면직물(HS 5208)의 원산지

① 누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② 누적을 적용할 경우



HS 5205 → HS 5208으로 4단위 세번이 변경되었지만 예외규정으로 HS 5205에서 변경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원산지기준 미충족

캐나다에서 수행한 공정이 미국에서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HS 5203 → HS 5208으로 4단위 세번이 변경되어 원산지기준 충족

3) Inama,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1), pp.308-309,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사례 ② 】 부가가치기준에서의 누적 (NAFTA 사례)⁴⁾

캐나다 생산자 A는 일본에서부터 미완성 베어링 링(HS 8482.99)을 \$0.75에 수입해 추가가공을 거쳐 베어링 링(HS 8482.99.11, 캐나다 HS코드 기준)을 제조한다. 이 때 베어링 링은 일본산 재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 때 미완성 베어링 링과 완성된 베어링 링은 같은 소호(sub-heading)로 분류되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아 비원산지로 판정받는다.

* HS 8482.99 원산지기준 : 4단위 세번변경

캐나다 생산자 A는 완성된 베어링 링(생산비용 \$1.30)을 미국 생산자 B에게 \$1.45에 수출하였으며, 미국 생산자 B는 이를 가공하여 볼 베어링(HS 8482.10)을 제조한 후 NAFTA를 활용해 멕시코에 수출하고자 한다.

• HS 8482.10의 원산지기준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캐나다 HS 기준으로 8482.99.11, 8482.99.91, 미국 HS 기준으로 8482.99.05, 8482.99.15, 8482.99.25, 멕시코 HS 기준으로 8482.99.01, 8482.99.03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HS 기준으로 8482.99.11, 8482.99.91, 미국 HS 기준으로 8482.99.05, 8482.99.15, 8482.99.25, 멕시코 HS 기준으로 8482.99.01, 8482.99.03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2.10호 내지 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거래가격법(공제법) 60퍼센트 이상, 또는

나. 순원가법 50퍼센트 이상

볼 베어링(HS 8482.10)은 선택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번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자 B는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여 볼 베어링의 원산지를 판정하고자 한다.

• 캐나다 생산자 A의 베어링 링 생산 비용		• 미국 생산자 B의 볼 베어링 생산 비용			
		① 누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② 누적을 적용할 경우	
		(달러)		(달러)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비원산지 재료(일본산)	0.75	비원산지 재료 ¹⁾	1.45	비원산지 재료의 '역외' 부가가치 ¹⁾	0.75
원산지 재료	0.15	원산지 재료	0.45	비원산지 재료의 '역내' 부가가치 ²⁾	0.55
인건비	0.35	인건비	0.75	원산지 재료	0.45
간접비	0.05	간접비	0.05	인건비	0.75
총 비용	1.30	총 비용	2.70	간접비	0.05
				총 비용	2.55

주 1) A의 베어링 판매 비용 \$1.45

주 1) A의 베어링 생산비용 \$1.30에서 일본산 재료비

2) A의 베어링 생산비용 \$1.30에서 일본산 재료비 공제

① 생산자 A가 생산원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 B는 비원산지 재료인 베어링 링의 역내 부가가치를 누적할 수 없다. 역내 부가가치는 46.3%로 60% 미만이기 때문에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text{누적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 RVC = \frac{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FOB} = \frac{\$2.70 - \$1.45}{\$2.70} = 46.3\% < 60.0\%$$

② 생산자 A가 원가정보를 공개할 경우 생산자 B는 누적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순원가법을 사용할 경우 역내부가가치가 70.6%로 50%를 초과하여 NA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text{누적을 적용할 경우 } RVC = \frac{NC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NC} = \frac{\$2.55 - \$0.75}{\$2.55} = 70.6\% > 50.0\%$$

* 생산자 A의 원가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생산자 B의 볼 베어링 부가가치 산정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FOB : Free on board(본선인도가격), NC : Net cost(순원가)

4) <http://www.cbp.gov/trade/nafta/guide-customs-procedures/other-instances-confer-origin/accumulation>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사례 ③ 】 가공공정기준에서의 누적 (EEA 사례)⁵⁾

포르투갈 생산자 A는 인도산 면사를 수입하여 면직물을 생산해 노르웨이 생산자 B에게 수출한다. 노르웨이 생산자 B는 A에게 수입한 면직물로 의류를 제조한다. EEA(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내에서는 완전누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노르웨이 생산자 B는 EEA 참여국인 포르투갈 생산자 A의 제직 공정(weaving)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의류의 원산지기준인 ‘사(yarn)’로부터의 제조를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노르웨이 B가 생산한 의류는 EEA 원산지(EEA origin)를 획득한다.

* 의류의 원산지기준 : (의류) 사로부터 제조(manufacture from yarn)



- 양자누적과 다르게 완전누적은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그 재료의 생산에 수행된 역내 공정과 부가가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 역내에서 수행된 세번변경, 부가가치, 공정을 최종재의 원산지 판정시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원산지기준 충족이 보다 용이함
 - 다만 역내에서 수행된 공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자사 생산품 뿐 아니라 공급받은 모든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요구됨

5)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European Commission, pp.14-15.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Ⅲ. FTA별 누적조항의 채택

1. 기체결 FTA에서 누적조항의 채택

- 원산지기준은 FTA 상품 협상에서 상품 양허와 더불어 중요한 협상 이슈가 되며 FTA 참여국은 자국의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원산지기준을 제시
 - FTA 원산지누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FTA 참여국은 자국의 산업 및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원산지 누적의 범위를 결정
 - 누적조항 채택시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고 FTA 역내 공급망 활성화 유인으로 작용
 - 전통적으로 원산지 재료의 누적만을 인정하는 양자누적이 기체결 FTA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주로 GSP(특혜무역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서 사용되었던 완전누적 방식도 최근 들어 메가 FTA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간 FTA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단일 FTA 내에서(intra-FTA)의 누적뿐 아니라 FTA간(inter-FTA)의 누적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누적이 존재
 - 원산지규정이 동일하게 체결된 FTA간에 누적을 허용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이 범유로지중해지역(Pan-Euro-Med zone) 등에서 인정됨
 - FTA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가 일정한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은 한-캐나다 FTA, EU-베트남 FTA 등에서 채택

2. 미국식, EU식 원산지규정 및 누적조항의 비교

■ 누적조항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미국(NAFTA)식 원산지기준과 EU식 원산지기준으로 크게 구분됨⁶⁾

- 미국, EU 등이 참여하고 있는 FTA를 분석할 때 역내 실질 변형(충분 공정) 판정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하는 미주 지역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주로 세번변정 기준(tariff shift approach)을 활용하며 공정 및 작업(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 기준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EU권은 주로 수행해야할 공정 및 작업(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으로 원산지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NAFTA식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완전생산개념(wholly obtained definition)을 채택⁷⁾
 - 따라서 NAFTA식은 원산지기준이 HS 6단위 이하의 세부단위로 상세하게 표현 되는 반면, EU식은 2단위, 4단위로 기술되며 6단위 이하의 상세 품목을 나타 내야 하는 경우에 'ex(하기 적시 품목 제외한)'를 활용함

〈NAFTA와 범유럽(Pan European)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비교〉

품목명	NAFTA		EU	
밀가루 · 곡분	1101-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101호 내지 제1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ex 제11류 1106, 10	사용된 제7류, 제8류, 제10류, 제11류, 제2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편물	6001-60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또는 제54류 내지 제55류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60류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 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따라서 원산지 누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원산지기준별 누적의 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6) 누적의 개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GSP(특혜무역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등 일방적인 특혜 무역(unilateral trade preference) 관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 EU 등과 같은 선진국 주도로 발전되어 왔음

7) NAFTA식은 완전생산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예를 들어 HS 코드 체계에서 세번변경(CC)이 불가능한 제1류 산 동물(Live animals)에 대해서도 2단위 세번변경(CC)으로 원산지기준을 표기

(사례) NAFTA와 범유로(Pan European)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면 편물에 누적 조항 적용시(제60류에 해당)

- (NAFTA식) 2단위 세번(류)변경이 충족되어야 하나 제52류(면제품)에서의 변경은 제외되므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려면 무조건 ‘역내’에서 원재료인 원면(cotton) 부터 생산되어야 함
- (EU식) 편물의 경우 천연섬유에서 생산되어야 하므로 방적(spinning) 및 편직(knitting or crocheting) 등 ‘최소한 두 가지 공정(double transformation)이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3.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 누적조항의 채택

■ 한국이 발효한 14건의 FTA에서는 상대국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모두 허용함

-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의 경우 원산지 재료 뿐 아니라 공정(production) 누적까지 인정되는 반면 EFTA, 아세안, EU, 중국과의 FTA 등은 원산지를 획득한 재료만 누적이 인정
- 한-캐나다 FTA는 한국 혹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 허용
 - FTA 당사국간 무역(intra-FTA)에서의 원산지 재료 누적 뿐 아니라 다른 FTA 당사국간 무역(inter-FTA)에서의 누적을 허용하는 것을 교차누적(cross cumulation)⁸⁾이라 함

〈한국의 기체결 FTA에서의 누적조항 비교〉

누적 유형	FTA
양자누적 + 일부 완전누적 (재료 및 공정 누적)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양자누적(재료누적)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터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양자누적 + 일부 교차누적 (재료누적)	한-캐나다 FTA

자료 : 한국의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저자 분류

8) 2015년 12월 정식 서명을 완료한 EU-베트남 FTA(2018년 발효 목표) 역시 한국산 직물(fabric)에 대해 베트남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교차누적조항을 채택하고 있음

〈한-캐나다 FTA 교차누적(cross cumulation) 예시〉

【 한-캐나다 FTA 누적조항 】

• 제3.7조 누적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 Article 3.7: Accumulation

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

uch as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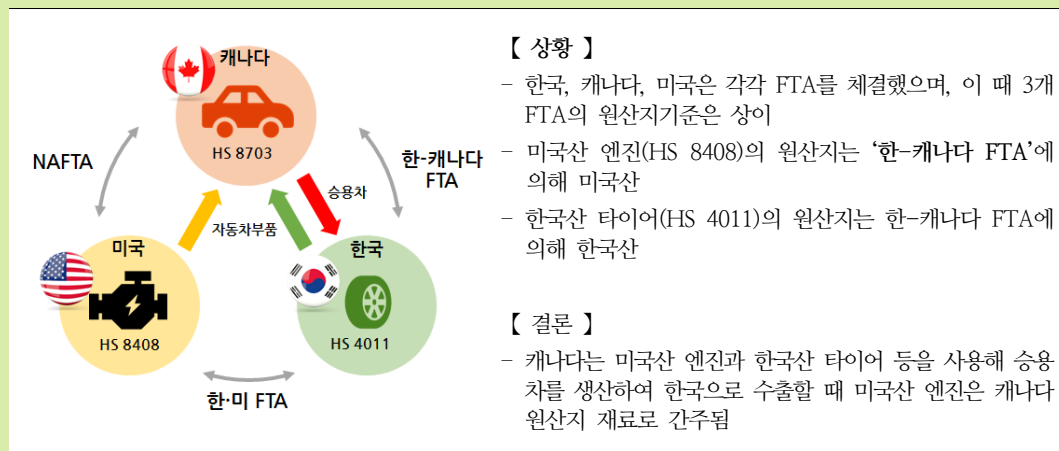
(국문) 제87류 주 규정	(영문) Chapter 87. Note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물품 생산에 사용된 제84류, 제85류, 제87류 또는 제94류의 모든 재료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 1. 해당 재료가 미합중국의 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리고 2. 미합중국의 영역이 이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료는 이 협정의 적용 가능한 원산지규정하에서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of heading 87.01 through 87.06 is an originating good, any material of Chapter 84, 85, 87, or 94 used in the production of that goo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f: 1. the material i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Party from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2. the material would be considered as an originating material under the applicable rule of origin of this Agreement if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re part of the free trade area established by this Agreement.

【 사례 】 교차누적 (한-캐나다 FTA 사례)⁹⁾

캐나다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여 승용차(HS 8703)를 생산하며, 한국에 수출한다.

일반적인 누적이 적용될 경우 캐나다에서 제조한 승용차(HS 8703)는 한국과 캐나다의 역내 부가가치로 원산지가 결정되며, 미국산 부품은 역외산 재료로 취급된다.

하지만 한-캐나다 FTA는 제8701호부터 제8706호에 대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역내 부가가치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9) 한-캐나다 FTA 협정문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참고 】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의 생성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은 각 국가가 상호 FTA를 체결하고 있을 때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누적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U, EFTA, 그리고 역사적으로 EU에게 일방적으로 호혜를 받는 ACP 국가가 EU의 주도로 원산지기준을 통일하여 유사누적을 채택한 것과는 다르게 미주, 아시아 지역의 경우 FTA간 상이한 원산지규정을 단일하게 통일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캐나다 FTA 협상팀은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의 대안으로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을 고안했다. 캐나다는 이스라엘, EFTA,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한국과의 FTA에 교차누적(cross cumulation)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참조 범유로지중해 누적(Pan-Euro-Med cumulation)

■ EU를 비롯한 EFTA, 터키, 지중해 지역 국가는 기존의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범유로지중해 누적(Pan-Euro-Med cumulation) 도입

- EU는 EU가 체결한 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 간의 FTA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비록 FTA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누적을 인정하는 범유로지중해 누적(Pan-Euro-Med cumulation)을 채택함
 - 1990년대 유럽은 60여개에 달하는 FTA를 체결하였으나 각각의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비효율이 발생
 - 단일 FTA 역내에 한정된 누적은 유럽 및 지중해 전역에 걸쳐 원자재와 중간재를 공급받는 복잡한 생산 네트워크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고려한 누적을 도입
- 범유로지중해 누적이 채택으로 유럽 및 지중해 국가간 체결된 FTA는 ① 원산지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개정했으며, ② FTA간(inter-FTA)에 ③ 원산지 지위(originating status)를 가진 상품 및 재료의 누적 허용
 - 1997년 EU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기존 FTA의 원산지규정을 범유럽누적(Pan-Euro-Med cumulation)으로 대체함
 - 범유로지중해 누적이 1997년 도입된 범유럽누적의 확대판으로 EFTA, 터키,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 참여국 등은 유로지중해 원산지협약(Euro Med origin protocol)을 채택함

• 범유로지중해 누적(Pan-Euro-Med cumulation system)의 적용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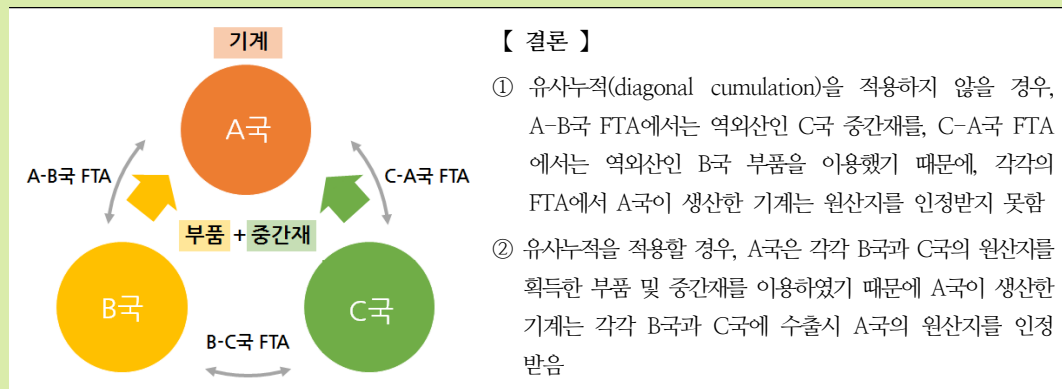
- EU 28개국
- EFTA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페로스 제도
-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 참여국 :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시리아, 튀니지, 터키, 마케도니아,
- EU의 안정 및 연합과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참여국 :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 몰도바

■ EU의 범유로지중해 누적은 기존의 단일 FTA에서 당사국끼리의 누적을 복수 FTA간 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를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이라고도 함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사례〉

【 사례 】 유사누적

A국, B국, C국은 각각 양자간 FTA를 체결했으며, 이 때 '3개 FTA는 모두 동일한 원산지기준'을 채택해야 함
B국이 A국에 수출하는 부품의 원산지는 A-B FTA에 의해 B국산이며, C국이 A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의 원산지는 C-A FTA에 의해 C국산



IV. 결론 및 시사점

- TPP, RCEP 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자간 FTA에 참여하고 향후 FTA의 활용 및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원산지 누적조항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누적은 각국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만 누적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교차누적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 협정별로 누적의 정도와 범위가 상이하고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협정 내에서도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누적의 적용 방식을 달리함

〈누적의 유형 요약〉

	한 개의 FTA 역내 (Intra FTA)	복수의 FTA 상호간 (Inter FTA)	
		FTA간 원산지기준 동일	FTA간 원산지기준 상이
원산지 재료만 인정	양자누적 (bilateral cumulation)	유사누적 (diagonal cumulation)	교차누적 (cross cumulation)
비원산지 재료의 역내산도 인정 (공정 및 부가가치 인정)	완전누적 (full cumulation)	—	완전 교차누적 (full cross cumulation)

자료 : Ticon Development Consulting(201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특히, 작년에 타결된 TPP는 FTA 활용 촉진과 역내 공급망 확대를 위해 완전 누적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협상중인 RCEP도 유사한 원산지규정 도입 검토
- 누적조항은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모든 산업에서 누적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생산이 분화된 산업에서 활용이 적합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섬유·의류, 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누적조항을 활용하여 역내 GVC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TPP 발효시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의류산업의 경우 역내 섬유 원료 및 중간재 공급 → 베트남 의류 제조 → 미국, 일본에서 소비 등 역내 생산 네트워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협상이 진행 중인 RCEP에 완전누적이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는 우리의 주된 제조기지인 중국 및 아세안에서 누적조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이 필요

- RCEP에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중·일,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춘 아세안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완전누적 도입시 동아시아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 뿐 아니라 주요 제조기지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가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의 경우 누적조항을 고려해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누적조항의 활용이 기업 활동에 유리할 경우 원부자재 조달처의 변경 또는 생산 기지의 이전까지 고려해야 함

■ 역내 누적을 허용함으로써 FTA 참여국이 역내 생산 네트워크에서 비교 우위 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산지 사후검증 측면을 고려 한다면 누적이 활용은 제한적일 수 있음

- FTA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혜택을 받은 품목이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임
- 완전누적 하에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수행된 생산 및 제조과정을 모두 최종 수출자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누적이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누적조항 활용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업계가 다양한 누적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업계는 구체적인 활용모델 및 사후검증에 대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① 한국의 FTA (14개 협정)

FTA	누적조항
칠레	제4.5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u>원산지</u>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에 대한 <u>자신이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u>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Article 4.5 1. <u>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u>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originating from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 <u>one's production</u>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u>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good</u>,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싱가포르	제4.9조 1.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u>원산지</u>로 하는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그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상품의 생산자는 당해 상품의 생산에 결합된 재료에 대한 <u>자신이 생산을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u>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이 제4.2조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Article 4.9 1. <u>Originating materials</u>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at a good is originating, the producer of a good may accumulate <u>one's production</u> with the production,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u>of materials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u>, so that the production of those materials is considered as done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complies with the criteria set out in Article 4.2.

FTA		누적조항
EFTA	제3조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u>타방 당사국을 원산지</u> 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를 간주한다.
	Article 3	1. Notwithstanding Article 2, <u>materials originating</u> in another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nnex shall be considered to be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Party concerned,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아세안	제7조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당사국의 영역의 <u>원산지 상품</u> 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Rule 7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nnex, a <u>good originating</u>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인도	제3.7조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u>원산지 재료</u>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Article 3.7	<u>Originating materials</u>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 the production of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EU 터키	제3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u>원산지로 하는 재료</u> 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Article 3	Notwithstanding Article 2,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a Party if such products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u>materials originating</u> in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not be necessary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페루	제3.6조	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의 <u>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u> 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느 한 생산자가 수행한 <u>생산</u> 은 그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품에 결합된 재료의 생산은 그 생산자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은 제 3.1조에 따라 수립된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rticle 3.6	1. <u>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u> from the territory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u>Production</u> carried out by a producer in the territory of a Party may be accumulated with the production of one or more producers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or the other Party, considered as carried out by that producer,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FTA		누적조항
미국	제6.5조	1.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u>원산지 상품이나 재료</u>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 6.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rticle 6.5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u>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u> of one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u>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u>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6.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호주	제3.5조	1. 한쪽 당사국의 <u>원산지 상품</u>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u>생산되는 경우</u>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1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rticle 3.5	1. <u>Originating goods</u>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A good is originating <u>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u>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1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캐나다	제3.7조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u>원산지로 하는 상품</u>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제3.3조(충분한 생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u>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u>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FTA		누적조항
캐나다	Article 3.7	1.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2.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is,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either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if: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sufficient production as defined in Article 3.3,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uch as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제3.6조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된다.
중국	Article 3.6	Where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are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other Party, the goods or materials so incorporated shall be regarded to be originating in the other Party.
	제3.6조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2.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 상품은 제3.2조 요건과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Article 3.6	1. Originating goods or materials of a Party, incorporated into a goo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2. A good is originating where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제3.6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그 시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효 중인 경제통합 협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베트남	Article 3.6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a good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Party, which is used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as material for a finished good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hall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Party where working or processing of the finished good has taken place. The Parties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aking into due consideration the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in force in the Asia Pacific region at the time of such review.
	제3.6조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그 시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효 중인 경제통합 협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② 그 외 FTA

FTA	누적조항
NAFTA	Article 404: Accumulation 1.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good is an originating good,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shall, at the choice of the exporter or producer of the good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claimed, be considered to have been performed in the territory of any of the Parties by that exporter or producer, provided that: a)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undergo an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set out in Annex 401, and the good satisfies any applicable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d b) the good satisfies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is Chapter. 2. For purposes of Article 402(10), the production of a producer that chooses to accumulate its production with that of other produc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production of a single producer.
TPP	Article 3.10: Accumulation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good is originating if the good i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provided that the good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Article 3.2 (Originating Goods) and all other applicable requirements in this Chapter. 2.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n originating good or material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that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nother good in the territory of another Party is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production undertaken on a non-originating material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y one or more producers may contribute toward the originating content of a goo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its origin, regardless of whether that production was sufficient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o the material itself.

〈참고자료〉

Donner Abreu, Maria.,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TO Staff Working Paper, 2013. No. ERSD-2013-05

European Commission., “A User’s Handbook to the Rules of Preferential Origin used in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countries participating to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Inama, Stefano.,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Ticon Development Consulting., “Cross-Cumulation in Free Trade Agreements: Opportunities, Potential and Challenges”, Grundlagender Wirtschaftspolitik NR. 21, 2013., pp.35-38

미무역대표부(USTR) <https://ustr.gov/tpp/>

미국 관세청(USCBP) <http://www.cbp.gov/trade/nafta>

세계관세기구(WCO) <http://www.wcoomd.org/en/topics.aspx>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http://ec.europa.eu/trade>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http://www.fta.go.kr>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18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5월 9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